

1. 개정이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낚시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어촌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유어장(수상낚시터)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 신청 절차를 추가(안 제2조)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상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수상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안 제3조)

- 수상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유어장 면적의 100분의 4 미만으로 하고, 시설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및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유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안 제5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3조)

- 수상낚시터를 원활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유어장 출입, 낚시터 이용객 준수사항 등에 수상낚시터를 추가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어장(「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만 해당한다)에 수상시설물(「낙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조제1호 가목의 잔교형좌대와 나목의 수상좌대만 해당한다)을 이용한 낙시터(이하 “수상낙시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라.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마. 라목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없다”를 “없고, 마을어장에 설치하는 수상낙시터의 시설 면적은 유어장 면적의 100분의 4 미만 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낙시터”를 “낙시터와 수상낙시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수상낙시터의 경우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및 「낙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적합할 것(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설비 기준은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낙시터를”을 “낙시터 및 수상낙시터를”로, “해당 가두리등”을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가두리낙시터를”을 “가두리낙시터 및 수상낙시터를”로, “가두리낙시터 이용객”을 “가두리낙시터 등 이용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상낙시터의 경우 오·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하고, 수상낙시터는 「낙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낙시터”를 “낙시터 및 수상낙시터(이하 이 조에서 “낙시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두리등 낙시터”를 “낙시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하여 가두리등”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두리등 낙시터”를 “낙시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두리등 낙시터의

안전관리”를 “낙시터의 안전관리”로, “가두리등 낙시터의 질서유지”를 “낙시터의 질서유지”로, “가두리등 낙시터를”을 “낙시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가두리등 낙시터”를 각각 “낙시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중 “낙시터”를 각각 “낙시터 및 수상낙시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낙시터”를 각각 “낙시터 및 수상낙시터”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제목 “가두리낙시터 이용객 명부”를 “가두리낙시터 등 이용객 명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어장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소속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양식장의 면허·허가사항	위 치		인접									
	면허·허가번호		제 호	업종		면적	ha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m			
	평균수심		m		포획·채취물의 종류							
	면허·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유어장의 위치·명칭 등	위치											
	유어장의 명칭							면적	ha			
④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방법												
⑤ 유어장의 시설계획	간이화장실		오물처리장		입간판		표지시설		기타편의시설			
	개소		개소		개		개		개			
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계획	관리선			안전장비								
	업종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	규모	구명동의	구명부환	구명줄	통신기기	소화기	구급약품	기타		
			톤									
⑦ 가두리 등 낚시터 및 수상 낚시터 시설계획 등	안전시설								기타			
	계류로프	돛	부력	보행통로	난간	구명동의	구명줄	구명부환	화장실	차양시설	접안시설	수용인원
⑧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												
⑩ 기타 참고사항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구역도 3. 「수산업법」 제65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7. 유어장(「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만 해당합니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8. 유어장(「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만 해당한다)에 수상시설물(「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조제1호 가목의 잔교형좌대와 나목의 수상좌대만 해당한다)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마. 라목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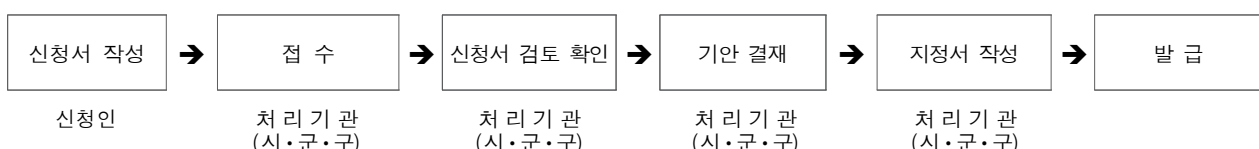
작성방법

- 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 ⑥ 중 “업종 “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 “란에는 면허받은 어업·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 또는 “승인관리선 “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 “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 “으로 각각 적습니다.
- ⑦ 중 “로프 “는 지름을 적고, “닷 “은 kg, “부력 “은 평방미터당 kg, “보행통로 “는 폭, “난간 “은 로프의 지름, “구명동의 “는 개수, “구명줄 “은 길이, “구명부환 “은 개수, “화장실 “은 좌변기 개수, “차양시설 “ 및 “접안시설 “은 개수를 각각 적습니다.

유어장의 위치·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부터 2만 5천분의 1까지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유어장의 구역을 표시하여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준용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 · 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유어장(「수산업법」 제7조 <u>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u> <u>의 어장만 해당한다</u>)에 수상 <u>시설물(「납시터의 시설 및</u> <u>장비 세부기준」 제2조제1호</u> <u>가목의 잔교형좌대와 나뭇목의</u> <u>수상좌대만 해당한다)을 이용</u> <u>한 납시터(이하 “수상납시터”</u> <u>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u> <u>는 다음 각 목의 서류</u> <u>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u> <u>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u> <u>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u> <u>인원 산정 내역서</u> <u>다.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u> <u>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u> <u>본</u> <u>라. 「납시 관리 및 육성법 시</u>

④・⑤ (생 략)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시장 · 군수· 구청장은 유어장의 지 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 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 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 양식업의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만,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	<u>행령」 제8조제1항 및 별 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 의 명세서</u> <u>마. 라목의 시설과 장비에 대 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u>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라 한다)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면적은 어류등양식업의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 이어
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
시터의 시설 면적은 총 1만평
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의2.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
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5의3. (생 략)

<신 설>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
입) ① (생 략)

없고, 마
을어장에 설치하는 수상낚시
터의 시설 면적은 유어장 면
적의 100분의 4 미만 이어야
한다.

5의2. ----- 낚시터와 수상낚
시터-----

--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수상낚시터의 경우 「낚
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및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적합할 것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
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설비 기준은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
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
리 등) ①가두리등 낚시터의 최
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4평방
미터당 1명으로 한다.

②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운
영하는 자가 지정한 종류의
미끼 외의 미끼 사용 금지

2. ~ 4. (생 략)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와 해
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두리
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안내하는 사항의 준수

③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운
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가두

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
리 등) ①-----

----- 하고, 수상낚시
터는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낚시터 및 수상낚시
터(이하 이 조에서 “낚시터”라
한다) -----
-----.

1. 낚시터-----

2. ~ 4. (현행과 같음)

5. -----
----- 위하여 -----

③낚시터-----

-----.

④----- 낚시터

리등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 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2. (생 략)
3. 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4. (생 략)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의 안전관리-----

----- 낚시터의 질서유지-----

----- 낚시터를 -----

-----.

⑤----- 낚시터

-----.

1. 낚시터-----

2. (현행과 같음)

3. 낚시터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①--

-----.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두리등 <u>낙시터</u>의 최대 동시 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때 10.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가두리등 <u>낙시터</u>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한 때 11. · 12. (생략) ② (생략)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u>낙시터 및 수상낙시터</u> ----- ----- 10. ----- ----- <u>낙시터 및 수상낙시터</u> ----- ----- 11.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